

20	년	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「개별단체용」 (갑)					
1.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(실소유 개별단체)							
단	체	명	사업자등록번호				
주	소						
2. 등기부상 소유자(향교재단·종교단체)							
단	체	명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- (- -)			
본	점	소	재	지			
3.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현황							
구	분	① 합	계	② 주	택		
물	건	수					
감	면	후	공	시	가		
산	출	세	액				
4.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(㎡)							
번호	⑤ 과세유형	⑥ 소	재	지	⑦ 주택 유형 또는 지목	⑧ 과세면적	
						토	지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신 고 인: (서명 또는 인)							
세무서장 귀하							
세무대리인	성	명	(인)	사업자등록번호	-	-	전화번호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의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.

1. ①합계: ②주택과 ③종합합산토지 및 ④별도합산토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②주택 · ③종합합산토지 · ④별도합산토지: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, 종합합산토지, 별도합산토지의 보유물건수, 감면후공시가격,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
3. ⑤과세유형: 주택은 "주택"을, 종합합산토지는 "종합"을, 별도합산토지는 "별도"를 적습니다.
4. ⑦주택유형 및 지목: ⑤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로 적고,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(대지, 공장용지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 등)을 적습니다.
5. ⑧과세면적: ⑤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건물(공용면적을 포함)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,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.

